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3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범위) 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정

1. 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범위) 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가구, 가정용 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등 14개 공산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의류, 중의류, 학생복, 한복, 장갑, 양말 등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제품마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년월,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시토록 하고,
- 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함
-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등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또는 종류,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함
- 가구, 가정용 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또는 종류,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및 치수 등 성분·성능·규격을 표시토록 함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내용

※ 아래의 기준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법령코너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35호 (2007. 1. 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 품질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분야별로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3을 적용한다.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표시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표시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1 섬유제품분야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안전·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부 칙 (제2007 - 35호, 2007. 1. 24.)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 - 1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

1. 목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성확인을 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주기 위함
2. 지정기간 : 2007. 1. 24 ~ 2009. 1. 23(2년간)
3. 시험·검사방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4. 시험·검사대상품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5. 시험·검사기관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기관(KOLAS)
 - 다. 자체시험 및 제3자인증이 가능한 품목
6.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2007. 1. 2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코너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9.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외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3호를 신설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업무를 산자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전화: 02)509-7242~45 팩스: 02)507-6657 전자우편: kwyun@kats.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